#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72

발의연월일: 2022. 4. 14.

발 의 자:金炳旭・구자근・김석기

김영식 · 김태호 · 박성민

유의동 • 이명수 • 정우택

태영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 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,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과 지역 등을 '국가해양정원'으로 지정하여 해양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'국가해양정원'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16호 신설).
- 나. 해양생태계보전·이용시설에 국가해양정원 내 해양자산의 보전·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함(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)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보호구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른 지정절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3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"국가해양정원"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·문화적·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해양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9조의3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43조의2에 따른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관리 제4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6. 국가해양정원 내 해양자산의 보전·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국가해양정원의 지정·관리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가.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 · 지역

- 나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·지역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해양정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6. "국가해양정원"이란 해양자
	산의 생태적·문화적·경제적
	가치를 보전하고 해양자산의
	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
	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
	관이 지정하는 공간(시설과
	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
	<u>다.</u>
제9조의3(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	제9조의3(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	2
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	
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	
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	
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	
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의2. 제43조의2에 따른 국가해
	양정원의 지정 및 관리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3조(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	제43조(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

설의 설치·운영) ① 해양수산 부장관·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(이하 "해양생태계 보전·이용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 6. (생 략)

 ② ~ ④ (생 략)

 <신 설>

설의 설치・운영) ①
<u>_</u>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국가해양정원 내 해양자산의 보전·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
-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3조의2(국가해양정원의 지정 ・관리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 리할 수 있다.

> <u>가.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</u> <u>해역·지역</u>

> <u>나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</u> <u>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</u> 및 그 인근 해역·지역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정원을 지정하려 는 경우 시·도지사 및 지역주 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 정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 이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해양정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 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 다.